

□ 감사기간 : '09.1.5 ~ 1.21(종합감사)

일련 번호	처분요구	지 적 내 용	조 치 결 과	비고
1	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예진흥기금 운용,관리 부실</li> <li>- 자체사업의 무리한 증가로 기금잠식</li> <li>-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기금손실 초래</li> <li>- 지원 기준없이 기금지원 (예충, 민예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아르크비전 2012 전략목표에 따른 핵심사업의 우선순위, 예산배분 비율조정을 통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</li> <li>○ 양 단체에 관련적인 균등배분을 지양하고 심의기준에 의거 지원심의를 통해 기간문예단체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선정, 합리적인 차등지원</li> <li>○ 심의기준은 사업의 우수성만을 기준으로 함</li> </ul>	완료
2	징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 부적절</li> <li>- 복합공간 분양임대 대행 용역을 추진하면서 재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재입찰공고 한 것은 부적절함</li> <li>- 분양 임대 용역업체인 (주)미전디앤씨측에 분양 사무실 무상제공 및 분양임대 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징계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자 엄중경고 조치</li> <li>○ 분양사무실 운영비용 반납요청 공문발송(09.3.23)</li> <li>- 반납금액: 23,156,000원</li> <li>○ 분양사무실 운영비용 반납 및 위약금 완납 이의제 기공문 접수(09.3.31/ (주)미전디앤씨)</li> <li>- 대상: (주)미전디앤씨(○○○)</li> <li>○ 위원회 법률자문사(한별) 법률검토 의뢰(09.4.21)</li> <li>○ 법무법인 한별 법률검토의견서제출(09.4.30)</li> <li>- 회신내용 : 분야대행계약서에 근거, 분양대행사에 사무실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</li> <li>○ 향후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 작성시 철저를 기하도록 함</li> </ul>	완료
3	주의 (기관경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나눔추진단 등 위원회의 별도조직 설치,운영 부적절</li> <li>- 정관을 위반한 별도조직 설치 운영</li> <li>- 불합리한 별도조직 운영 관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체 해체</li> </ul>	완료
4	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무처장 운영 제도 개선</li> <li>- 현재 직원신분인 사무처장을 임원신분으로 변경(정관개정 조치)하여 위원회 책임경영 실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무처장 임원 신분변경을 정관 개정 검토 추진</li> <li>- 문화관광부,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협의 추진</li> </ul>	추진중

□ 감사기간 : '09.1.5 ~ 1.21(종합감사)

일련 번호	처분요구 종 류	지 적 내 용	조 치 결 과	비고
5	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편법집행(예술지원컨설팅센터 운영/뒤뜰공사)</li> <li>- 기금보조사업(민간경상보조)인 예술지원컨설팅사업을 예술지원컨설팅센터 운영단을 설립(2007)하여 위탁 운영하였고, '08년에는 작가지원금 명목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뒤뜰공사를 추진하였음</li> <li>- 관련직원 주의 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은 사업수행 주체를 “대학로문화재단”으로 위탁하였음</li> <li>- 사업변경 주최 위원회 안건상정 (09.5.26)</li> <li>- 지원컨설팅서비스 사업 위탁 통보 (대학로문화재단/09.6.4)</li> <li>○ 관련직원 주의 조치(09.4.7)</li> </ul>	완료
6	주의(개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관련 특혜지원 및 공개 내역 축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09년 위원관련 단체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(경영공시/사업지원현황/지원심의 기피제도/09위원관련 지원사업내역)</li> <li>○ 위원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 배제</li> <li>-위원의 심의위원 추천조항 규정을 삭제 하고 '09년 사업 심의에 기 적용</li> </ul>	완료
7	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 등 복무관리 부적정</li> <li>- 강사료 지급기준없이 내부 직원에게 강사료 지급</li> <li>- 출장관련 복무관리 부적정</li> <li>- 교육프로그램 강사 선정 관련 부적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기준 마련</li> <li>- 2009년도 예술인력개발원 기본운영 계획(09.2.13) 수립시 강사료 지급기준 마련 및 시행 중</li> <li>- 개발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강사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</li> <li>- 내부직원 강사 초빙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직원 소속부서 및 인사관리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출장 승인 후에 초빙</li> <li>- 업무시간외 강의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불가</li> <li>- 강사 자격기준</li> <li>. 2009년 예술인력개발원 기본운영계획 (09.2.13)수립시 강사 자격기준 마련 및 시행중</li> </ul>	완료

□ 감사기간 : '09.1.5 ~ 1.21(종합감사)

일련 번호	처분요구 종 류	지 적 내 용	조 치 결 과	비고
8	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계업무 부적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업무 전담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 체결(11건)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결여</li> <li>-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산회계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, 추후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투명한 회계업무처리를 준수토록 함</li> </ul>	완료
9	징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하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 문화예술진흥기금 담보 은행 대출 증당 부적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금담보로 한 은행대출부당</li> <li>- 은행대출로 민간투자분 증당은 부적정</li> <li>- 부적정한 은행대출금 상환으로 기금 손실</li> </ul> </li> <li>- 관련직원 징계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자 관련자 엄중경고 조치</li> </ul>	완료